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8. 9. 20.

사회건설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8월 31일

나. 발 의 자 : 오현숙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9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9. 14.)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오현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복지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구청장의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위원회 간사, 참석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제)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조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퇴소 조치 등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제4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제6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제10조까지는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청취 및 긴급한 경우 구청장이 우선조치 하고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12. 8. 5.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음에도 우리구는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sup>1)</sup>하지 않고 있어

의원발의를 통해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와 지원 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시립 2개소, 구립 2개소, 민간 14개소로 총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구 저소득층 아동 중 약 520여명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와 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12조제3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연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1)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조례 서울시 17개 자치구에서 조례제정 시행중(2018년 8월 기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
----------	----

발의년월일 : 2018년 8 월 일

발의자 : 오현숙 의원 외 4명

##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호대상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보호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다.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위원장 직무, 위원회 회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바. 구청장의 우선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위원회 간사, 참석수당,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 **3. 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아동복지법」 제1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8. 24. ~ 8. 30.):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원청 또는 영등포구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